

자율준수편람



목 차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1.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1.1 의미	1
1.2 이해당사자	1
1.3 CP(Compliance Program)이란 무엇인가요?	1
1.4 왜 CP(Compliance Program)를 운영하나요?	1
2.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2
3. CP 7대 구성요소	2

11. 회사 주요 업무 별 주의사항

1. 당사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4
2. 협력업체(공급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2.1 경쟁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위(법 제23조제1항제5호)	8
2.2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법 제23조제1항제4호)	8
2.3 부당하게 차별취급하는 행위(법 제23조제1항제1호)	9
3. 하도급거래 관련 유의사항	
3.1 제조 하도급거래 주요 분쟁 세부 내역	12
3.2 하도급거래란	16
3.3 법 적용 대상	21
3.4 하도급거래 단계 별 하도급법 상의 규제 내용	22
3.5 위반 시 제재	52
3.6 업무 시 유의사항	54
3.7 하도급거래 단계 별 확인사항	55
3.8 Q&A	58
3.9 하도급 법정기한 규정	62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1.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1.1 의의

-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준수를 위하여 사업자들이 도입,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당사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자율준수매뉴얼」 또는 「자율준수매뉴얼」이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제정·시행하기 위하여 각 사업자들이 작성한 문서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당사의 자율준수 편람을 말합니다.

1.2 이해당사자

- 당사는 원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위탁사업자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됩니다.
- 「계열사」란 당사의 계열사를 말합니다.
- 「경쟁업체」란 회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적인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 「거래업체 (거래상대방)」란 회사와 계약관계가 체결된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를 말합니다. **수급사업자**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 「직원」이란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합니다.
- 「공정위」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합니다.

1.3 CP(Compliance Program)이란 무엇인가요?

-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왜 CP(Compliance Program)를 운영하나요?

1.4.1 기업의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을 강화시켜줍니다.

- 기업의 자율준수 노력 → 경쟁력 강화 → 기업의 지속적 발전

1.4.2 법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형, 무형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법 위반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risk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1.4.3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 CP 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공정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습니다.

1.4.4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경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2.1 공정거래법 및 관계법령

모든 직원은 공정거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 주십시오.

-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지칭
- 「하도급법」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
- 「공정거래관계법령」이란 상기의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통칭
- 「법」 또는 「법령」이라 함은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하나, 광의로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 수입기관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합니다.

3. CP 7대 구성요소

3.1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여야 합니다.

- 기업 내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천명과 관심 표명이 무엇보다 중요. 따라서,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가 기업경영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전 직원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준수 의지는 **인트라넷, 전자메일** 등을 통해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으며 모든 직원들이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식시켜야 합니다.

3.2 자율준수관리자를 지정(임명)하여야 합니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의 중심으로 CP 운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게 됩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합니다.

3.3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합니다.

-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al)을 작성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부서에 배포하여야 합니다.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에 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및 사례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업의 사업 내용 변화, 공정거래 관련법 개정, 심결례 변화 등에 맞춰 정기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내 인트라넷 등을 활용,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3.4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 임직원 대상으로 각각의 담당분야에서 공정거래법규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또는 임직원들의 직책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CP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정책이 중요해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교육 또한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은 반드시 반기당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3.5 범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 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임. 따라서 감사(Audit), 감독(Supervision), 보고(Reporting)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감독시스템(모니터링 제도)을 구축,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시, 감독 체계를 운영. 또한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 활동 계획과 실적 등의 주요사항을 반기 당 1회 이상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6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뒤따라야 합니다.

- 기업 내 자율준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은 내부적으로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경쟁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이를 경쟁법 집행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7 문서를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문서 작성과 보관은 기업 내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입니다. 특히 CP 등급평가 시 CP 구축 및 모니터링 관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자료, 경쟁법적 문제행위 등을 증명하는 자료가 요구되므로 CP 운용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11. 회사 주요업무 별 주의사항

1. 당사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제조업에서 원사업자인 우리가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실무사항입니다.
특히 당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하도급법 준수가 중요합니다.

1.1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라면 하도급법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대상이 되는 것에 주의해야 함

- 하도급법은 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의 의무로 서면교부 등의 9가지 의무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등의 13가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행위와 금지행위에 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 됩니다
- “우월적 지위 남용”이란 ① “우월적 지위”(=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상대방에 대해 우월한 것), ② “남용”(=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하는 것을 말함. 때문에 어떠한 자가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고, 어떠한 행위가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문제가 됩니다.

1.1.1 어떤 자가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가?

- 우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우월적 지위)란 거래상대방에 대해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의 계속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 사업 경영 상 커다란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해 사업자의 요청이 자기에게 현저히 불이익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 또한 이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처에 대한 거래의존도, 당해 거래처의 시장에서의 지위, 거래처 변경가능성, 사업규모의 격차, 상품의 수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당사는 협력업체에 대해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1.1.2 어떠한 행위가 “남용행위”에 해당하는가?

- “남용행위”(=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에 관하여는 하도급법이 “일방적인 하도급대금의 인하”(부당 감액)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이것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법 상의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점에 주의 하십시오.

1.2 하도급 관련하여 고객사로부터 제조 위탁을 받아 이를 협력업체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문제시 되기 쉬운 행위 유형은 ① 배송비용의 부담, ② 원재료 가격 등의 가격 전가, ③ 일방적 원가 저감율(低減率)의 제시, ④ 거래조건의 변경, ⑤ 전적 시의 조건 변화에 의한 가격의 재검토, ⑥ 수령거부·검수지연, ⑦ 유상 지급 원재료의 조기 결제, ⑧ 금형도면 및 기술노하우 등의 유출 등이 있습니다.

1.2.1 배송비용의 부담

- 위탁사업자가 Just-In-Time 생산방식의 도입에 따라 종전에 일회 납품되었던 제품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납품시키기 때문에 수탁사업자의 제품 운송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의점
 -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위탁사업자(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종전과 같은 하도급대금으로 납품시키는 때에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분할납품시의 운임 부담에 대하여도 비용 산정 등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동지침
 - 위탁대금에 포함된 운송경비에 대하여 1회의 운송량과 운반형태 등의 조건을 가미하면서, 위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가 충분한 협의를 하여 합리적인 경비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운송요율을 결정할 때에는 전적의 전제조건으로서 발착지, 납품빈도(회수)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전적을 받고, 이 내용을 정밀 조사한 후 합의한 상태에서 요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1.2.2 원재료 가격 등의 가격전가

- 원재료 등의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를 위탁사업자가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전의 가격으로 납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의점
 - 하도급법 상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위탁사업자(원사업자)가 수탁사업자(수급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종전의 가격으로 납품을 요구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거래 가격에 대해서는 비용 계산 등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동지침
 - 원재료 등의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 경비 동향 등을 파악, 명확한 산출 근거에 기초하여 위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가 충분한 협의를 하여 합리적인 제품단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도 합의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3 일방적 원가 저감율(低減率)의 제시

- 위탁사업자가 자사의 예산 단가,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여 수탁사업자에게 이 단가, 가격으로 납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의점
 - 하도급법 상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원사업자)의 예산 단가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통상 지급하는 대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은 하도급법상 일방적 하도급대금 인하여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발주 후에 원사업자가 예산 단가, 가격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한 하도급법 상의 부담 감액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위반이 됩니다.
- 행동지침
 - 제품의 단가, 위탁대금에 대해 품질과 반품의 대응 조건을 가미하면서, 위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합리적인 제품단가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위탁사업자에 있어서는 사내의 구매 및 조달 담당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제품가격 설정의 근거가 되는 견적서가 예정 사양과 실제 발주량을 반영한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사내의 예산승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1.2.4 거래조건의 변경

- 위탁사업자가 일정 수량을 생산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탁사업자에게 제품단가의 견적을 받고, 실제로는 견적시보다 적은 발주량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견적시의 단가를 발주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의점
 - 하도급법 상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원사업자)가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한 전적 시의 예정 단가(이 단가는 소량 생산을 하는 경우의 통상의 대가를 대폭 하회하는 것임)에 근거,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하고 실제로는 전적 시 보다도 적은 양을 발주하는 것은 하도급법 상의 일방적 하도급대금 인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 실제 발주시에 생산량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실제의 생산량에 근거한 비용계산 등으로 위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하도급법 상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원사업자)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발주 시에 결정된 수량을 하회한 납품 수량으로 발주를 중단한 경우 하도급법 상 부당한 급부 내용의 변경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 동시에 발주가 중단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발주로 정한 하도급대금을 하회하는 대금 정도로 지급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상 대금 감액에 해당되어 하도급법 위반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1.2.5 전적 시의 조건 변화에 의한 가격의 재검토

- 전적에 있어서 납품예상 수가 발주 시에 대폭 감소하는 등 제품단가가 변동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위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는 충분히 협의하여 합리적인 제품단가를 재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6 수령 거부, 검수 지연

1.2.6.1 수령 거부

- 어느 제품의 발주를 받아 위탁사업자에게 납품하도록 한 경우,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담당자가 휴가를 가서 수령할 수 없는” 등으로서 수탁사업자가 납품 거부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의점
 - 하도급법 상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원사업자)가 수탁사업자(수급사업자)에 대해 위탁한 급부의 목적물에 대해 지정된 납기에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원사업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하도급법 상의 수령 거부에 해당되어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동지침
 - 제품의 납품일에 대해 위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가 일정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여 확실하게 납품할 수 있는 일을 서면으로 정하여, 원사업자가 제품을 수령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검과 병행하여 일정을 관리하게 되어 생산관리의 효율화에도 기여합니다.

1.2.6.2 검수 지연(지급 지연)

- 프레스 등에 필요한 금형, 목형, 기어의 형(이하 “형” 이라고 함)을 검수할 때에는 기술적으로 판단이 곤란하며 여러 번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관점에서 금형 시험 중인 것으로 여기기 쉬우나, 실제에는 이미 금형을 사용한 제품 제조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수검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서 위탁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유의점
 - 하도급법 상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원사업자)는 수검이 종료되었는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금형을 수령한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것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 또한 수검의 결과, 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재작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도) 위탁사업자(원사업자)는 수검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금형을 수령한 일로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 또한 원사업자가 필요한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급부 수령 이전에 발주 변경(설계 변경 등)을 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행동지침

- 기술적으로 곤란한 성과물의 수검을 효율적으로 행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우선 발주 시의 사양과 수검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전에 필요한 기간을 명확히 정해 이 기간 내에 수검을 종료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7 유상 지급 원재료의 조기 결제

- 수탁사업자가 위탁사업자로부터 가공 대상물을 유상으로 지급하고 이것을 가공하여 위탁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유상지급재를 실제의 가공시기보다도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기 때문에 가공대상물을 납품한 후의 대금 수령보다도 유상지급재의 대금을 조기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의점

-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지급한 유상지급재의 대금을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하도급대금보다 조기에 지급시키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동지침

- 유상지급재의 결제에 대하여는 가공 후의 제품의 납품대금에서 이 가공대상물의 대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때 수탁사업자가 위탁사업자에게 당월 납품한 것 중에 포함된 유상지급재를 개별로 골라내어 이 금액을 합쳐하여 당월 납품대금의 지급 시에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 외에, 경리업무작업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대금으로부터 공제할 시기를 1개월 지연시키는 방법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1.2.8 금형도면 및 기술·노하우 등의 유출

-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상품·금형의 제조 위탁을 행한 때에는 발주서면 상의 급부의 내용에 금형도면과 제조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형의 납품과 함께 당해 도면을 무상으로 납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상 부당한 경제상의 이익의 제공 요청 금지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 유의점

- 도면과 노하우를 제공시키려는 경우에는 별도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하든가 또는 사전에 정한 발주 내용에 금형도면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백하게 하여 당해 도면을 포함한 대가를 수탁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한 상태에서 설정할 것이 필요합니다.

○ 행동지침

- 도면의 이전 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가능한 한 이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협력업체(공급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협력업체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협력업체들과 일반 거래를 할 때에는 꼭 한번만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공정거래법을 잘 준수할 수 있습니다.

2.1 경쟁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위(법 제23조제1항제5호)

□ 개요

- 협력업체에 대해 당사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강제할 경우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 부당하게 협력업체가 당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협력업체에 당사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당사가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금지 이유

- 협력업체와 거래 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시킬 경우,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자신의 독점력을 강화, 유지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파트너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Must Not Do These

-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계약 체결 시 당사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경우
- 자기가 구입하는 강판 등을 경쟁사에게는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2.2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법 제23조제1항제4호)

□ 개요

- 협력업체(공급업체)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협력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조건에는 각종 구속사항, 저가 또는 고가 매입, 가격조건, 대금지급 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 검사 방법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들로써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부품 등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반품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증가분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금지 이유

- 협력업체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불이익을 제공한다면 결과적으로 협력업체는 그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경쟁조건이 불리하게 되며, 반대로 행위자가 이익을 받게 된다면 경쟁 여건 면에서 그의 경쟁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어 결국 자유경쟁의 기반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Must Not Do These

- 납품업체나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설정한 경우
 - 협력업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 계약 내용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자기에게만 해석권이 있는 것으로 규정한 조항
 - 납품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은 규정하면서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은 면제하도록 한 조항
 -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서 상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의 내규를 따르도록 한 조항
 - 재판 관할 법원을 일률적으로 자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규정한 조항
-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대금지급 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 계약서 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는 행위
- 당사의 귀책사유로 공기·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간접비를 시공업체의 청구가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하는 행위
-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수 지연,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기간 등을 납품기간에 포함시켜 거래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
- 선시공하게 한 후 기성금은 지연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금융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납품 지시 후 생산이 완료된 물량을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이를 취소하는 행위

□ 업무상 유의사항

- 협력업체에 대한 제재를 위한 목적의 공급물량 감축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3 부당하게 차별취급하는 행위(법 제23조제1항제1호)

□ 개요

- 특정 협력업체에(만) 부당하게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협력업체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하게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거래조건 차별(이행방법이나 대금의 결제조건 차별 등)
 - 거래조건에는 수량, 품질, 규격, 인도조건, 대금지급조건, 수송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 금지 이유

- 다른 제조업자 제품의 취급제한 등 공정거래법 상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 달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유리한 차별을 당하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불리한 차별을 받는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고 불리한 차별을 당하는 사업자는 경쟁상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Must Not Do These

- 경쟁사업자에 대한 제품공급 비중에 따라 어음지급기간 등 대금결제비중을 달리하는 행위

□ 업무상 유의사항

-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격 차별이 현저해야 함
- 전직 직원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부당한 차별취급에 해당할 수 있음

3. 하도급거래 관련 유의사항

협력업체(수급사업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하도급 거래 시 발생했던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이면서 강행법규이므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에 의해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분쟁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면교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 원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 수급사업자로부터 위반행위의 정보 제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서면실태조사나 중소기업청에 의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관계는 경제력, 사업규모, 시장지배력 등의 차이로 말미암아 지배·복종의 귀속관계로 되는 경우가 빈번한 바, 수급사업자의 교섭력을 보완하고 원·수급사업자 간의 수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기계 및 장비업 하도급대금 총액 구성 항목

◦ 하도급대금 결정 시 참고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 개별물량 + 수익성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제조이윤
- 재료값 변동에 맞춤
- 제품 단위 위주로 구성
- 제작비, 임율, 공구
- 제작비 (운송비, 인건비, 공구비)
- 자재비, 인건비, 가주 품목
- 발전기조립 = 임율 x 일반관리비 x 기업이윤 x unit(물량)으로 구성(전력사급품으로 조립)
- 재료비, 제작비 - 인건비, 기계감가, 공구비, 일반관리비 - 운반, 기타관리, 이윤
- 기계단가, 인건비, 운송비
- 공사시수, 자재비, 인건비
- 하도급대금 = 인건비, 기계장비 (재료비)
- 인건비, 원자재비, 기계비용비
- 자재비(변동이 심함), 인건비, 주항목
- 주 베어링단가, 임율비, 기계감가
- 하도급대금 = 단가 x 물량, 원자재비 x 인건비

- 단가 = 제조원가 + 일반 관리비 + 영업의 수익
- 주(인건비 + 가공비)

3.1 제조 하도급거래 주요 분쟁 세부 내역

3.1.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관한 분쟁의 모습

3.1.1.1 공사물량의 문제

- 사례 : 양 당사자의 각기 다른 주장 내용입니다.
 - 수급사업자의 입장 : 공사 견적서만 제출한 상태에서 공사에 선투입, 실제 하도급대금 결정시 견적가보다 저가로 결정되었다.
 - 원사업자의 입장 : 견적서 제출 요구시 공사도면에 의한 정확한 물량이 아님을 사전 통보하였으며, 이후 실제 시공시 구조도면에 의한 실공사 물량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3.1.1.2 공사단가 결정 과정의 문제

- 사례 1
 - 수급사업자의 입장 : 구체적인 단가를 정한 하도급계약 체결 없이 작업중간에 소급하여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하여 하도급계약을 강요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하도급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사례 2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협상가격으로 강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한 단가 및 품셈표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시 강제적인 사안은 없었다.
- 사례 3
 - 수급사업자의 입장 : 동일업종에도 불구하고 적용단가를 달리하여 강제적 협상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계약 체결 시 협의에 의해 결정하였으며, 동일업종이라 할 지라도 작업환경이 다르면 단가결정의 적용기준이 다르다.
- 사례 4
 - 수급사업자의 입장 : 하도급대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표준품셈표의 시수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사내 하도급대금 내부 산정기준인 표준품셈표 단위시수는 매년 자재비 인상 등의 원가상승과 생산공법 개선, 기술개발, 생산시설 보완 등 생산성 향상 가능 범위 내에서 인하 조정한 것이다.
- 사례 5
 - 수급사업자의 입장 : 동일한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다른 하도급업체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위 공사는 작업여건과 시공난이도에 따라 단위작업별 표준품셈표를 산정한 것이다. 위 공사 일부만 시공하는 수급사업자가 전체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적용할 수는 없다.
- 사례 6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작업물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을 변경하면서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저가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표준품셈표를 변경하면서 내부 factor 적용 시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 하였으며, 또한 외부 factor 적용 시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제출 받아 결정하였다.

○ 사례 7

- 수급사업자의 입장 : 하도급업체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단가 및 품셈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계약 체결 시 강제적 사안은 없었다.

○ 사례 8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작업에 필요한 도급장비에 소요되는 소모공구, 소모재료 등을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켰다.
- 원사업자의 입장 : 계약서 상에 위와 같은 소요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3.1.1.3 공사단가 및 시수의 수시 변경

○ 사례 1

- 수급사업자의 입장 : 당초 협의한 공사단가나 시수를 일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인하 변경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부담하게 결정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거래기간 중 수 차례에 걸친 단가 및 시수 변경이 발생하여 매번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하였다. 한편 최종적으로 인하된 단가 등에 따라 서면계약서를 체결하였다.

3.1.1.4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 사례 1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공사를 시공하였으나 실 시공한 금액보다 삭감하여 지급받았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수급사업자는 추가공사를 시공한 적이 없으며 또한 이에 따른 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 사례 2

- 수급사업자의 입장 : 당초 계약내용에 없던 접합작업을 추가 시공케 한 후 추가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접합작업은 당초 계약공사인 조립공사의 한 부분일 뿐 추가공사가 아니다.

○ 사례 3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추가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추가공사대금을 수급사업자가 청구하지 않아서 미지급 한 것이다.

3.1.1.5 하도급대금의 부담 감액

○ 사례1

- 수급사업자의 입장 : 견적서만 제출 받고 공사에 선 투입한 후 실제 계약 체결 시에는 견적물량보다 낮은 물량 혹은 저가로 하도급계약 체결을 강요 받았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여러 하도급업체의 견적서를 검토하여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 사례 2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수정 및 추가공사대금을 삭감하여 정산 지급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수급사업자와 협의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 사례 3
 - 수급사업자의 입장 : 불량 및 하자를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수급사업자의 불량작업 및 미작업 부분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확인을 받고 대금에서 공제하였다.
- 사례 4
 - 수급사업자의 입장 : 하도급대금을 삭감하기 위해 표준단가표의 가중치를 협의 없이 임의로 적용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과다 청구할 목적으로 사전 협의된 표준단가표에 의하지 않고 실제 시공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하였다.
- 사례 5
 - 수급사업자의 입장 : 공사용량에 표준단가표의 단가, 가중치를 산정한 사전전적서(하도급대금 청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확인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공사금액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단가표의 가중치 및 단가를 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 사례 6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선 시공한 후 사후 계약 체결 시 대금을 일방적으로 저가로 결정하여 계약체결을 강요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공사 시공 전에 수급사업자와 협의로 대금 및 공사기간 등을 개별계약서 형태로 체결하였으며, 이에 의해 감액 없이 지급하였으며 선 시공시킨 일이 없다.

3.1.1.6 하도급대금의 부당공제

- 사례 1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자재 등의 원재료를 늦게 공급받음으로 인해 공사대기가 발생하였으나, 원사업자는 공사지연을 들어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부당 공제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수급사업자가 공사포기를 함으로 인해 하도급대금 중 일부분을 위약금조로 공제하였다.

3.1.1.7 서면 미교부

- 사례 1
 - 수급사업자의 입장 : 공사착공 전에 공사용량 및 대금을 확정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견적서만으로 공사에 착공하였다.
- 사례 2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사전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사후에 소급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3.1.1.8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 사례 1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장기어음지급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장기어음지급에 따른 어음할인료는 지급하지 않았다.

3.1.1.9 부당한 경영간섭

- 사례 1
 - 수급사업자의 입장 : 경영실패파악을 명목으로 원사업자가 임금대장과 장부를 수시로 검사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경영실사는 없었다. 다만 경영적자 보조금 지급 요청 시에 실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3.1.1.10 부당한 계약 해지

○ 사례 1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고 타 업체에 위탁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노임체불, 작업중지, 태업, 기성대금 압류 등 비정상적인 영업상황이었다. 즉, 계약불이행상태가 계속되고 작업공정만회 각서도 미 이행함에 따라 계약 해지하였다.

3.1.1.11 기타

○ 사례 1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산재사고처리비용을 전가 받았다.

○ 사례 2

- 수급사업자 : 선행작업 지연 등의 이유로 작업대기비용, 잔업 휴일근무 등에 대한 비용을 미지급하였다.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의 추가 인건비 발생은 공사대금의 문제가 아니다.

○ 사례 3

- 수급사업자의 입장 : 하도급대금과는 별도로 공과잡비를 미지급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하도급 계약 시 대금에는 기본적인 공과잡비가 포함되어 있다.

○ 사례 4

- 수급사업자의 입장 : 계약서상에 계약해지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 원사업자의 입장 : 계약해지 유예기간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계약해지에 따라 즉시 해지한 적이 없다.

3.1.2 불공정 하도급 거래 사례 분석

○ 서면 미교부

- 전적서만 제출 받고 선 시공하게 하거나
- 공사 시공 전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작업 중간에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

○ 불완전한 서면 교부

- 기본계약서 외에 개별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하거나
- 또한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주문서만으로 공사를 시공도록 함
- 하도급대금의 결정 과정에서 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서면을 사전에 미 교부한 상태에서 공사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 계약서 상의 표준품셈표를 적용하여 대금을 산정,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어음할인료 미지급

- 장기어음 지급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경우

○ 추가공사 대금의 미지급

- 추가공사를 시공하였으나 이에 따른 공사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 지연이자 미지급

-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원금만 지급하고 지연 이자는 미지급하는 경우

3.1.3 하도급거래 분쟁 사전예방책

- 원사업자는 전적서만 제출 받고 공사단가 및 공사대금을 미 확정한 상태에서 선시공을 요구하고 사후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단가 결정 시 전적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인해 하도급금액의 감액 분쟁이 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하도급단가를 협의, 결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상호간에 분쟁발생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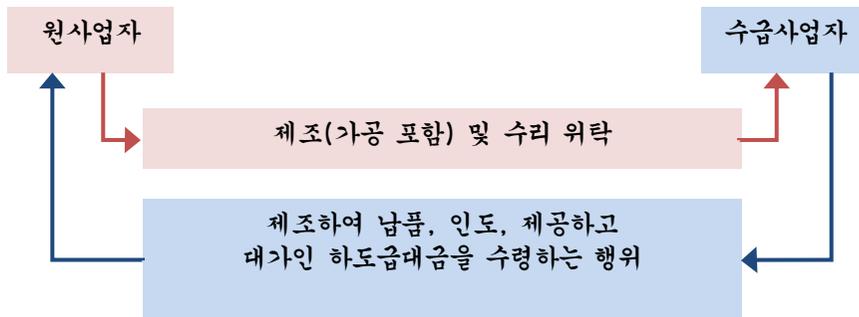
- 공사 중단에 따른 위약금의 공제 여부 역시도 상호 계약서 상에 명시함이 필요합니다.
- 작업에 필요한 도급장비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소모공구, 소모재료 등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해 계약서 상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이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3.2 하도급거래란

협력업체에 위탁하는 제조하도급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제조나 수리 등의 하도급에 해당할 경우에 하도급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우리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를 중소기업(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위탁하는 경우)이나 우리회사보다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가 적은 기업에 제조위탁하는 경우에 하도급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 수리 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참조).
- 당 사와 관련하여서는 하도급에는 제조와 수리 위탁 등이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성에 착안하여 “그 업에 따른 위탁” 을 하는 경우를 “하도급거래” 로 보고 있습니다.

3.2.1 제조 위탁(법 제2조 제6항) : 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3.2.1.1 제조 위탁 관련 여러 개념 정의

- 「제조 위탁」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규격·품질·성능(性能)·형상(形狀)·디자인·브랜드 등을 지정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를 의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업(業)으로서」 :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제조」 : 원재료인 물품에 일정한 공작(工作)을 가해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가공」이란 원재료인 물품에 일정한 공작(工作)을 가함에 의해 일정한 가치를 부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물품」 : 동산을 말하며 부동산을 포함하지 아니 함. 물품 그 자체의 제조 위탁은 일반적으로 제품 외주 또는 완성품 외주로 불리는 하도급거래입니다.
- 「반제품」 : 목적물인 물품의 제조 과정에 있는 제조물을 말합니다.
- 「부품」 : 목적물인 물품에 그 상태대로 장치하여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제조물을 말합니다.

- 「부속품」 : 목적물인 물품에 그대로 장치(裝置)시킨다든지 목적물인 물품에 부속시킴에 의해 그 효용을 증가시키는 제조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 상품이나 제품에 부착시키는 명판, 라벨 등
 - 상품이나 제품을 사용할 시 등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품질보증서, 보호카바, 수납케이스 등
 - 상품이나 제품과 일체로 판매되는 용기 및 포장용 물품 등
- 「원재료」 : 목적물인 물품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자료(원료, 재료)를 말합니다.
-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 : 「물품 또는 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당해 물품 등의 형상을 본뜬 금속제의 물품을 말합니다. 나아가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원사업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스스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 대해 그 금형을 사용하여 제조케 하려고 위탁하는 경우의 금형도 포함합니다.

규격품·표준품을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조 위탁의 대상이 아니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규격품·표준품일지라도 그 일부에 원사업자를 위해 가공 등을 시킨 경우에는 대상이 되며, 나아가 카탈로그 제품 등일지라도 범용성이 낮아 하도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위탁을 받을 때부터 제조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조 위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조설비를 가지지 않아, 제조를 하지 않는 사업자가 그 판매하는 물품에 관한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것도 「제조 위탁」에 해당합니다.

3.2.1.2 제조 위탁의 유형

- 유형 1 : 물품 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제품, 중간제품, 특별주문재료 등의 제조·가공 외주, 제조공정 중의 검사·운반 등의 작업 외주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나아가 판매하는 물품의 부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도 해당됩니다.

또한, 판매하는 물품의 부속품(취급설명서·보증서, 용기, 포장재료, 라벨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물품의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제조(가공을 포함)를 위탁하는 경우에, 조립 외주(제품조립, 완성품 조립 등), 가공 외주(기계가공, 프레스·판금 등), 부품 외주(스프링 등), 금형 외주 등이 포함됩니다.
- 유형 2 : 물품의 제조를 도급 받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제품에 관해 수주생산하고 있는데, 그 생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가공」을 도급 받고 있는 경우에 그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제조·가공을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유형 3 : 물품의 수리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또는 원재료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사에서 수리하고 있는 기계 수리에 필요한

특수부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2.1.3 제조 위탁 해당 여부 판정 기준

- [하도급법 제2조제1항] “하도급거래(제조 위탁 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고.....이를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하여.....
- 제조 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고시
 - [1.나.] 물품의 제조수리 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 단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됩니다.
- 하도급법(제2조제1항) 상 제조 위탁 거래의 요건은
 - 첫째, “원사업자의 위탁행위”
 - 둘째, “수급사업자의 제조행위”
 - 셋째, “위탁 받은 것을 제조하여”의 세가지입니다.
- 수급사업자의 “제조”가 원사업자의 “위탁”에 어느 정도 의존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상기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 쟁점이 됩니다.
 - 상기 조항은 “당해 제조 위탁에 기해서 물품 제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위탁과 제조 간의 상당하고도 긴밀한 연관성”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 따라서 당해 위탁물이 특정 원사업자만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물이어서 원사업자의 위탁에 의존함이 없이 독자적으로 제조 가능한 경우라 하여도,
 - 어떤 특수한 거래환경 하에서 그 제조 여부가 원사업자의 위탁에 기해 결정되었다면 하도급법 상 제조 위탁으로 인정합니다.
 - 결론적으로 단순임가공 위탁과 비대체물에 대한 제조 위탁뿐만 아니라 “위탁과 제조 간의 긴밀한 연관성”이 인정되는 대체물에 대한 제조 위탁까지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 이제까지의 위원회 심결례를 통해 볼 때, “단순 임가공 위탁” 및 “비대체물에 대한 제조 위탁”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규격화 또는 표준화가 이루어진 대체물에 대한 제조 위탁 사건의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빈번히 발생하였는 바,
 - 심결 과정의 각종 기록을 통해 볼 때 이 경우 위탁물이 단지 대체물이라는 이유로 사건 처리 방향이 결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 거래조건, 납품비율, 생산물의 특성 등으로 인해 “위탁”과 “제조”가 어느 정도의 연관 또는 의존관계에 있는가의 여부가 핵심적 판단기준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대체물과 비대체물의 구별기준>

	대체물	비대체물
물건의 개성	문제삼지 않음	중시
물건의 지정	“종류, 품질, 수량” 式	“바로 이 물건” 式
거래상대방	제조사 미확정	제조사 확정됨이 일반적
규격 또는 품질의 지정	수급사업자 또는 제3자	원사업자
대체가능성	재고물량, 제3자 위탁물로 대체공급 가능(○)	재고물량, 제3자 위탁물로 대체공급 불능(×)
“제조”의 “위탁”에 대한 의존성	제조행위가 위탁이전 또는 위탁과는 관계없이 이루어 질 수 있음(△)	제조행위가 반드시 위탁을 받은 후 위탁에 기해서 이루어짐(○)

<제조 위탁 거래와 관련된 계약 유형의 비교>

계약의 종류	도급계약	제조물공급계약		매매계약
		비대체물	대체물	
재료 조달 의무	주문자	제조사	제조사	제조사(판매자)
소유권 이전	주문자가 처음부터 보유	제조사⇒주문자	제조사⇒주문자	제조사(판매자) ⇒주문자
일의 완성 의무 (제조 의무)	본질적 요소	본질적 요소 (기제조품의 공급으로 대체 불능)	본질적 요소(×) (기제조품의 공급으로 대체 가능)	불발생
민법학의 태도	도급	도급 (제조>판매)	매매 (제조<판매)	매매
주문자의 제조사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	계약구조 자체 만으로 우월적 지위 존재	계약구조 자체만으로 우월적 지위 존재	“위탁과 제조 간 연관성” 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우월적 지위 존재	

3.2.2 수리 위탁(법 제2조 제8항)

3.2.2.1 수리 위탁의 개념 정의

- 「수리 위탁」 : 물품의 수리를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및 그가 사용하는 물품을 자가수리하고 있는 경우, 그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2.2.2 수리 위탁의 종류

- 유형 1 : 물품의 수리를 도급 받고 있는 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동차수리업자가 도급받은 자동차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유형 2 : 자가 사용하는 물품을 자가 수리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수리행위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사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류나 설비기계에

부속되는 배선·배관 등의 수리를 사내에서도 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그가 사용하는 물품의 수리」를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 즉, 다른 사업자로부터 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자가 사용하는 물품의 수리를 반복·계속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는 정도로 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물품의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수리하는 능력이 잠재적으로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업으로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2.3 지식정보성과물 작성 위탁(법 제2조 제11항)

- 정보프로그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나 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말합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컨설팅(업무 분석, 기능 설정 등이 기록된 제안서, 마스터플랜 형태로 나타남)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관련 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설계 등)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시스템 개발(소프트웨어 개발, 하드웨어 개발, 네트워크 설치 등) 및 시스템 운영과 이에 따른 자료 입력, 도면 입력, DB 구축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기타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유지보수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3.3 법 적용 대상

3.3.1 법 적용 대상 사업자



- 외국인 투자기업일지라도 국내에 제조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하도급법 적용 대상’ 이 됩니다.
- 당사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나타난 ‘업태’ 에 ‘도매, 소매’ 혹은 ‘대리점’ 으로 표기되어 있고 당사에 표준품이나 시장품을 납품하는 업체라 해서 전부 하도급법 제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즉, ‘당사가 요구하는 SPEC에 의해 제조, 납품했느냐’ 하는 점에 의해 구분되어야 합니다.

3.3.2 법 적용 대상 기간

- 하도급법 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만, 신고사건의 경우 3년 이내에 신고된 사건은 3년이 경과하여도 조사가 가능합니다(법 제23조).
 - 여기서의 “거래종료일” 이란, 제조 위탁은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의미하며,
 -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합니다.

3.3.3 하도급법 위반과 사법상의 효력

- 대법원은 하도급법에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 사법상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해석상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4 하도급거래 단계 별 하도급법 상의 규제 내용

<주된 의무사항>

의무사항	개요
서면의 교부 (제3조)	원사업자는 발주 시에 수급사업자의 급부 내용,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및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류의 작성·보존 (제3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제조 위탁, 건설 위탁, 수리 위탁, 용역 위탁을 한 경우 급부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금금 지급 (제6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제조 등의 위탁 전 선금금을 받은 경우 제조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 및 검사 결과 통보 (제9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의 목적물 등 수령일[제조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既成)부분을 통지 받은 날을 포함]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 (제13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하에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에 대해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 내에 가능한 한 짧은 기간으로 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이자 지급 (제13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 일수에 따라 당해 미지급액에 20%를 곱한 액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단가 조정 (제16조의2)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안에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된 금지사항>

금지사항	개요
부당한 특약 금지 (제3조의4)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제4조)	동종 또는 유사품의 가격 또는 시중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것
수령거부 등 금지(제8조)	주문한 상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
부당한 반품 금지(제10조)	수취한 물품 등을 반품하는 것
하도급 대금 감액 금지 (제11조)	사전에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
하도급 대금 지급지연 금지 (제13조 제1항)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
할인 곤란한 어음교부의 금지 (제13조제6항)	일반 금융기관에서 할인 받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어음을 교부하는 것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 금지 (제12조)	원사업자가 지정한 물품, 용역을 강제적으로 구입, 이용시키는 것
부당한 경제상의 이익의 제공 요청 금지 (제12조의2)	수급사업자에게 금전, 노무의 제공 등을 강요하는 것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제12조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것
부당한 급부 내용의 변경 및 부당한 재작업의 금지 (제16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주문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수령 후에 재작업을 시키는 것

금지사항	개요
보복조치의 금지(제19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린 것을 이유로 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해 수량삭감,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
유상지급 원자재 등의 대가의 조기결제 금지(제12조)	유상으로 지급한 원자재의 대가를 당해 원자재를 이용한 급부에 관제한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보다 이른 시기에 상계하거나 지급하게 하는 것

3.4.1 하도급계약 체결 단계

3.4.1.1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법 제3조)

- 양자 간의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 내용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사후 분쟁 예방 필요성 때문에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 서면 미교부의 정당화 사유는 원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23303판결)
- 서면 발급 대상은 주된 하도급계약 뿐만 아니라 종된 하도급계약도 포함합니다(ex. 사출분야 하도급거래에 부수된 소물 금형 제작)
 - 원사업자는 정해진 거래조건이 이행되도록 발주 시에는 발주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정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나 시공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 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구두발주 시에 야기될 다양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사업자는 발주 시 발주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결정한 상태에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목적물 등”)의 내용
 -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와 장소
 -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 하도급대금(선금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 포함)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단,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서면의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 내용에 따라 적절히 발주서면을 작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발주 후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서면을 교부하는 것이며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하도급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급부 내용, 하도급 대금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서류로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보존해야 할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 품의 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합니다(컴퓨터 등 전자적 형태의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
-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은 위탁거래에 따라 목적물의 납품 또는 인도일을 말합니다.

■ 하도급법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 수급사업자의 예견가능성(서면이 없어도 계약서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빈번한 거래에 있어서 물량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 빈번한 거래에 있어서 법정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나, 누락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 Must Not Do These

-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서면교부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 계약서면은 하도급 계약 시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소한 제조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하며, 공사나 제조에 착수한 후에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 추가공사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추가계약서 등을 미교부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이며
- 추가 변경된 공사 물량이 입증되었으나 정산에 다름이 있어 변경계약서나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 하도급 계약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므로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서면미교부에 해당합니다.
- 계약서면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허위서면 교부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 서면 사전 교부 예외(Dos)

-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 다만 원사업자는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기본계약서 또는 개별계약서에 위탁일, 품명,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 등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재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
 - 빈번한 거래의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으나 업종의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기타 전기, 전자적 형태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법 제3조 제5항)

-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인정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 성립을 추정하는 제도입니다.

- 구두로 작업을 지시 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회신에는 반드시 원사업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함).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성립이 추정되므로 추후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절차

- 수급사업자의 통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 포함)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 내용의 확인을 요청
 - 수급사업자의 서면통지 사항(시행령 제4조):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하도급대금/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일시/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수급사업자의 통지 방법: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공인서명, 공인전자우편)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원사업자의 주소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원사업자의 회신: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공인전자우편은 포함. 단, 이메일은 제외)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및 행동지침

- “서면” 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상 6가지 법정기재사항이 있어야 하고, 실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1) 위탁일과 위탁의 내용
 - (2)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 (3)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5)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6) 위탁 후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또한 형식상 쌍방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전자문서, 공인전자서명도 가능).
- “서면” 은 ‘언제’ 발급(교부)해야 하는가(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발급해야 합니다. 즉,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늦어도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이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초의 계약 내용이 실제 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변경서면을 작성·교부하여야 합니다.

- 서면 교부 대상 서면
 - 기본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법 제3조)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법 제3조 제6항)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법 제11조)
 - 기술자료제공요구서(법 제12조의3)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법 제8조)
 - 검사결과통지서(법 제9조)
 - 계약변경내역 통지서(법 제16조)

- 서류 교부 대상 서면
 -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목적물 수령증명서
 - 법 제9조에 따른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 법 제6조에 따른 선금금 및 지연이자, 법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음할인료, 수수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에 따른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제7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
 - 법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원자재가격 상승 등 납품단가 조정사유 발생 시 수급사업자의 단가 조정 요청이 있으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원·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서면미교부행위로 인정되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주)대전전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2012.12.3)

- 2010년도 9월경 하도급업체에게 전기장판용 온도조절기를 제조 위탁(위탁금액: 1억 8,200만원)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한 사실이 있음
- 하도급계약 내용(위탁내용, 위탁금액, 검사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착수 전에 발급하도록 하여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에 위반됨

■ 서면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 하도급업체와 거래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지

- 특약이나 부관 등에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없는지
- 계약서 교부 시기 및 내용
 - 업무 위탁 전에 계약서를 교부하고 있는지
 -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내용은 발주서 등으로 보완, 교부하고 있는지
- 계약 추정제도 관련
 - 구매 담당자가 계약 추정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지
 - 구매 담당자가 사전 발주 또는 구두 발주한 사실은 없는지
 - 사내 접수 문서 관리 system에 문제는 없는지
 - 하도급 관련 문서 접수 시 관리 process는 정비되어 있는지

□ 하도급 서면 발급·보존 가이드라인

- 발급 대상 서면 : 7개 유형
- 하도급거래 개시(2개 유형) 및 이행단계(5개 유형)
 - 서면의 종류, 각 서면 별 필수 기재 사항, 서면발급 시점, 발급 방법, 표준양식(4개)* 등
 - * 계약 확인서면(요청서면, 회신서면), 기술자료 요구서, 감액서면 등
 - 하도급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거나 계약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존재하는 등의 경우 예외
 - *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 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간주

<하도급법상 발급대상 서면의 유형과 주요 기재의무 사항>

단계	발급서면의 종류
거래개시 (제3조)	①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제3조) - 위탁일, 목적물의 내용,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납품일 및 장소 -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재료 제공 시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② 하도급계약 확인서면(제3조 제6항,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관련) - 수급사업자로부터 구두발주 내용에 대해 확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사를 서면으로 회신
거래과정보존 (제8-16조)	③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제8조) ④ 검사결과 통지서(제9조) ⑤ 감액서면 :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물량, 금액, 감액방법 등(제11조) ⑥ 기술자료 요구서 : 기술자료 요구시 명칭 및 범위, 목적, 비밀유지,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 대가 등(제12조의3) ⑦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제16조) · 보존 대상 서면 : 14개 유형 · 보존대상 서면의 종류, 보존 기간, 보존 방식 등 -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서면 7개과 중요 하도급거래 내용을 기재한 서류 7개

<보존 대상 서류>

번호	보존 대상 서류	비고
1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	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법 제3조 제6항
3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법 제8조
4	검사결과 통지서	법 제9조
5	감액 서면	법 제11조
6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법 제12조의3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법 제16조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9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10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1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12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14	입찰명세서, 낙찰지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3.4.1.2 부당한 하도급 결정 금지(제4조)

-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부당하게 단가인하 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 Must Not Do These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결정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전적 또는 거짓 전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전적토록 하고,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전적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납품단가 후려치기)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고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전적가격을 하회하는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전비용 등을 이유로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전적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협력업체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 제공을 경고하면서 하도급 금액을 저가로 결정하는 경우

■ 위법성 요건의 판단기준 및 행동지침

- [부당한 방법]으로의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단가 및 수량)을 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단가 결정 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예상수량으로 단가를 정하고 추후 수량을 확정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수량증감에 따른 단가조정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해 위탁한 뒤 나중에 원가계산, 전적가격 등의 산출이 가능할 때(예컨대, 제1회차 납품 후) 대금을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1회차 목적물이 납품된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 [일률적 인하] 예시
 - 원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전년도 영업이익률이 원사업자보다 높다는 이유로 종전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거래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예컨대, 100억 이상인 수급사업자들에게 7%씩, 50억~100억인 수급사업자들에게 5%씩, 50억 이하인 수급사업자들에게 3%씩)로 단가를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규모별로 일정률(예컨대, 10만원 이상 품목은 5%씩, 10만원 미만 품목은 3%씩)로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인하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의 종전 계약가격이 A는 250원, B는 300원, C는 350원으로 각자 다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200원으로 획일적으로 인하하여 결정하는 행위

◦ [목표할당] 예시

- 원사업자가 환율변동, 임금상승, 물가인상, 가격경쟁 심화 등과 같은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지개선 또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구매비용 절감(원가절감) 목표를 정하여 이를 수급사업자 별로 일방적으로 절감액을 할당한 후 수급사업자의 전적가격 또는 종전가격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감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 [일방적 인하] 예시

- 원사업자가 종전 계약의 목적물과 동일한 것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새로이 결정하면서 미리 정한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액을 수급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할당한 후 수급사업자들이 제출한 전적가격을 기준으로 할당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당해 단가인하에 대해 부정적 또는 수용불가 의사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인하폭을 조금 줄여주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용할 것을 독려함에 따라 마지못해 단가인하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단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위락하여 목적물의 납품이 완료된 후 수급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은 상태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단가)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신개발품을 발주하면서 우선 임시단가(가단가)를 정하고 추후 목적물의 최초 납품분에 대한 가격산출이 가능한 때 단가를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임시단가 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과 재계약시 자신의 임금인상 및 환율변동에 따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종전 계약에 비해 낮은 단가에 합의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현대모비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2012.8.30)

- 2008. 6월부터 2009. 10월까지 기간 동안 13개 품목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위탁하기 위하여 8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심의입찰을 실시하면서 심의입찰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한 업체 또는 차순위 업체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면서 최저 입찰가보다 0.6%~10% 낮게 낙찰가를 결정한 사실이 있음

■ 삼성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08.4.3)

- 2002년 9월경 정보통신사업분야의 2003년도 원가절감 목표액을 1조 7,433억원으로 수립 후 단가인하를 통해 1조 2002억원을 달성하기로 하고, 이 중 국내업체에 대하여 6,397억원 목표액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충전기 등 부품별 원가절감목표를 담당자별로 부여하여 단가인하를 추진
- 이 중 이번에 범위반으로 적발된 충전기 부품의 경우 그 단가인하 목표금액을 209억원으로 정하고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7개 납품업체의 납품가 총액을 상반기 6.6%, 하반기 9.8%씩 일률적으로 인하하게 하는 단가인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다.

3.4.1.3 경쟁 입찰과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 최저가 입찰 금액이 예정가격(실행예산)을 상회하여 예정가격 수준에 맞추어 최저가 입찰 업체와 Negotiation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하도급대금 상한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므로 예정가격이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니라면 위반은 아닙니다.
- 입증책임 : 당해 예정가격이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 저가심의를 하여 심의 기준에 미달하는 최저가 업체를 탈락 시킨 후, 차순위 업체와 Negotiation하는 경우, 저가심의는 부실시공이나 공기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면 적법합니다. 다만,
 - 전제조건 : 저가심의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공지 하였어야 합니다.

1. 경쟁입찰시 실행예산 이내인 경우 최저가 투찰 업체와 입찰금액 대로 계약하는 것은 무방하나, 시가보다 높다고 자체 판단하고 추가 협상하는 행위는 당초 경쟁입찰을 부질 아무런 근거가 없어 범위반에 해당합니다.

2. 최저가 금액이 원사업자의 실행예산을 초과할 경우 유찰 후 재입찰을 실시한다고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시 이를 반영하였다면, 실제 실행예산 초과시 유찰 후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재입찰의 결과로서 입찰금액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거나 높아져서 해당 투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확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4. 그러나 수차례 재입찰 후에도 실행 예산범위 내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다면 실행예산을 너무 낮게 책정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러한 고려없이 재입찰 결과 단순히 예정가격을 초과함을 이유로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할 경우 범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 감액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의2 신설)

- 감액사유, 감액기준, 감액물량, 감액금액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등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 할 서면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의3 신설)

-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가치를 가지는 자료를 말합니다.

3.4.1.4 부당특약금지(제3조의4)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 Must Not Do These

-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다음과 같은 약정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 중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인허가, 환경·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설계·작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요구 등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약정
 -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단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기타 위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4.2 하도급거래 이행단계

3.4.2.1 부당한 발주취소(수령거부)금지(법 제8조)

-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취소나 수령거부행위가 부당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부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예컨대, 발주서대로 제조·시공되지 않았거나, 납기를 현저히 초과하였거나, 납품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등의 제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부당하게 발주취소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 Must Not Do These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시공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위탁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보관장소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의 이유로 이미 위탁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Dos

- 발주내용과 다른 물품을 납품하거나 납기를 어저 납품하는 경우 수령의무 없습니다.
- 수급사업자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선고 신청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 가능합니다.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 가능합니다.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를 상당 기간 동안 지연하는 등으로 기간 내에 제조 및 건설이 곤란할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 가능합니다.

■ 위탁 취소 및 수령거부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발주 system 점검
 - 구두 발주, 사전 발주 등 발주 system에 문제는 없는지
 - 구두 발주나 사전 발주에 대한 하도급 업체의 대응 방법은 어떠한지
- 위탁 취소, 수령 거부 발생 여부
 - 발주 후 임의로 이를 취소 변경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은 없는지
 - 행위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는지

■ 삼성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2.8.7)

- 삼성전자는 14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발주한 24,523건에 대하여 납기일이 지난 시점에 이알피(ERP) 전산시스템을 통해 생산물량 감소, 생산일정 변경, 자재 단종, 설계 변경, 과잉 발주 등의 이유를 들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위탁취소에 대해 허용(Accept)할 것인지 불허(Reject)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동 전산시스템상으로 이러한 선택을 요구 받은 수급사업자가 전산시스템 상에 표시된 허용(Accept)표시 부분을 클릭함에 따라 동 전산시스템상의 발주항목에서 해당 수급사업자의 발주정보가 동시에 삭제되게 함으로써 위탁을 취소한 사실이 있음

○ 위법성 판단

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

- 삼성전자의 사정에 기인한 사유로 본건 제조위탁을 취소

나. 제조위탁의 취소가 임의에 의한 것임

- 제조위탁 취소내역은 모두 납품 기일이 지난 이후에 취소된 건들로써 취소의 허용 여부를 물어보는 시점에 이미 수급사업자에게 손해의 발생은 예정된 것
- 수급사업자들이 위탁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이 취소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없음
- 수급사업자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고, 피심인은 관련시장에서 업계 1위 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탁취소를 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발주취소 2,355건에 대하여 합의서가 없음을 스스로 확인

■ 삼성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2.8.7)

- 삼성전자는 5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발주한 4,051건에 대하여 납기일이 지난 시점에 이알피(ERP) 전산시스템을 통해 생산물량 감소, 생산일정 변경, 자재 단종, 설계 변경, 과잉 발주 등의 이유를 들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하고자 하는 위탁취소에 대해 허용(Accept)할 것인지 불허(Reject)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동 전산시스템상으로 이러한 선택을 요구받은 수급사업자가 전산시스템상에 표시된 불허 표시 부분을 클릭함에 따라 입고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납기일이 도과된 시점에 목적물을 수령

○ 위법성 판단

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

- 삼성전자의 사정에 기인한 사유로 본건 제조위탁을 취소

나. 목적물 수령 지연에 해당됨

- 목적물을 수령한 시점은 납기일로부터 평균 86일(최소 2일, 최대 669일) 지연되었는바,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을 현저히 지연하여 수령한 것으로 인정

3.4.2.2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법 제5조)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물품이나 장비 등을 구입하게 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Must Not Do These

- 구매·외주담당자 등 하도급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목표량을 할당하여 구입을 요청하거나 불응 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됨을 시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수급사업자가 구입의사가 없음에도 재차 구입을 요구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영업행위와 관련이 없는 물품의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 Dos

- 위탁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 목적물 제조, 수리 시공 시 특정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업무상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계약 당시 아무 언급 없다가 제조위탁 후 발주자가 지정한 제조자재라는 이유로 고가 자재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발주자의 요구이므로 물품구매강제는 아니나, 계약 당시 자재사용 언급이 없었다면 이로 인한 하도급대금이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차액보전 및 증액 필요합니다.

■ 구매강제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하도급 업체와 거래 내역
 - 하도급 업체와 본 계약 내용 이외에 물품이나 장비 기타를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 거래 시 거래 사유 및 거래 대금은 적정한지
- 거래 과정에서의 강제성 여부
 - 하도급 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구매를 강제하지는 않는지
 - 물품 등을 구매, 사용토록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3.4.2.3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법 제9조)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진행됩니다.
- 검사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 부담이 원칙임.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제조업의 경우 대량 납품하는 경우 샘플검사를 하거나 무검사 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납품 받은 후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반품에 관한 사항(반품사유, 시기, 보상문제 등)이 명백히 밝혀져 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입니다.
 - 검사의 방법
 - : 검사의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전수검사, 발췌검사, 제3자에 대한 검사의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위임, 무검사 합격 등이 있습니다.
 - 검사결과와 통지기간(10일)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예시) : 다음의 경우에는 10일을 넘어서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빨리 통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으나,
 - :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유의사항

-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란 공사의 시공 또는 기성 통지일을 말합니다.
- 서면 통지가 원칙이므로 구두통지는 법 위반입니다.
- 수급사업자가 매월 말일에 원사업자에게 기성청구 제출 경우 목적물 인수일은 수급사업자의 기성청구에 원사업자가 기성검사를 하여 기성을 확정해 준 날이며, 검사결과통지의무에 따라 10일 내에 인수하여야 합니다.

■ **주대전전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2012.12.3)**

-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온도조절기의 검사결과를 납품 받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제2항에 위반됨

■ **검사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계약서 기재 내용
 - 본 계약서상 검사 기준 및 방법, 시기 등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 특약이나 부관이 본 계약서 내용과 상반되지는 않는지
- 검사 방법의 타당성
 - 외주 업체에 검사 의뢰 시 검사의 범위는 적당인지
 - 외주 검사 업체와의 계약상 검사 범위내의 하자를 이유로 claim을 제기하지는 않는지
- 검사 결과 통보 여부
 - 검사 결과를 법 규정 기간 내에 통보하고 있는지
 - 검사 결과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 시 합리적인 사유는 존재하는지

3.4.2.4 **부당반품의 금지(법 제10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부당하게 반품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 **Must Not Do These**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 납기 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정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업무상 유의사항** : 합격 처리 후 반품이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를 규명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킬수 있는지 여부?

- 당사자간에 하도급계약 체결 시 검사방식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시킨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반품 발생 시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반품원인을 규명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불합격으로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인삼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09.9.1)**

- 인삼스는 사출물을 두 차례 납품 받은 후, 납품 받은 날부터 2~6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발주하였다는 이유로 반품하였음
- 위법성 판단
 - 인삼스 직원의 실수로 인한 과잉발주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반품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과잉 발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출물을 납품 받은 후 검사 결과를 통보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출물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반품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삼성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08.4.3)**

- 2003.1.1. 부터 2005.5.30. 까지 G사 등 46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부품제조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산계획이나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이미 생산 완료한 부품을 납기일보다 2개월에서 8개월까지 부당하게 지연하여 수령하였음

■ **부당 반품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반품에 대한 관련 임, 직원의 인식
 - 구매부서나 생산부서에서 관행적으로 기 수령한 제품 등을 반품하고 있지는 않는지
 - 사전 검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후에 claim 제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 반품에 대한 회사의 대비책이나 절차 등 존재 여부
 - 반품의 귀책사유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는지
 - claim 협약서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 교부하고 있는지

3.4.2.5 **부담감액 금지(법 제11조)**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발주 시에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에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찬금 등의 징수,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 명목과 방법, 금액에 관계없이 감액하는 일체의 감액행위는 금지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이 발주 시에 정해진 금액(발주시에 즉시 교부하였던 서면에 기재된 금액)으로부터 일정액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값을 깎아준다거나, 협찬금, 할인 등의 감액의 명목, 방법,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며 또한 수급사업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하도급법 위반이 됩니다.
- 판단기준
 - 법 제11조 제1항<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 법 제11조 제2항 제1호
 - 위탁 시 하도급대금 감액조건을 명시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을 갖는지 여부

- 법제11조 제2항 제7호<불합리한 이유로 부당>
 - 원사업자의 경영실책이나 가격경쟁력 상실 등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부당
 - 감액이유가 합리적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당
- 부당하게 감액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 Must Not Do These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2013.11.29 시행)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도하게 감액하는 행위(2013.11.29 시행)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2013.11.29 시행)
-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절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 놓고 납기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달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표준안전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 하도급계약 후 추가시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 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여 당초의 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행위

■ 업무상 유의사항 : 다음 사항들의 대응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가의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하도급대금으로부터 일정비율 및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하는 시점에 생기는 위반행위이나 하도급대금 감액은 발주시에 정해진 액을 사후적으로 공제함으로써 생기는 위반행위입니다.
- ‘제품을 싼값으로 수주하였다’ 것 또는 ‘판매확대를 위해 협력하길 바란다’ 는 등의 이유로 사전에 정해진 하도급대금으로부터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 : 하도급대금으로부터 공제하는 것 이외에 감액분을 별도 협찬금으로써 징수하는 경우도 감액이 됩니다.
- 판매확대와 신규판매 route 확보를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총액은 그대로 두고 현품을 침부시켜 납품수량을 증대시킴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 : 하도급대금 총액은 그대로 두고 수량을 증대시키는 경우도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합니다.

- 수급사업자와의 사이에 단가인하에 대해 합의가 성립하여 단가개정이 되었어도 이 합의 전에 이미 발주된 것에 대해서까지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 : 구단가로부터 신단가로 인하하는 때에는 신단가는 단가 개정이 합의된 후의 발주분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발주한 분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도 감액이 됩니다.
- 어음을 수급사업자의 희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사무수수료로서 하도급대금에서 자사의 단기조달금리 상당액을 초과한 액을 감액하는 것
-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하도급대금을 은행구좌로 납품 시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것 :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없으면 하도급대금에서 은행납품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원사업자가 부담한 실비의 범위내입니다
- 소비세, 지방소비세액 상당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법 위반행위입니다.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Must Not Do These에 해당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합니다.(법 제11조 제3항).
 - :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기타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1.8.8)

- 세진중공업은 수급사업자에게 도장작업을 제조위탁한 후, 2010. 3. 8. 하도급대금의 단가를 합의하면서 합의 성립일 이전인 2010. 1. 2. ~ 3. 7.까지 제조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여** 기존 단가에서 10% 인하된 단가로 감액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3월 하도급대금에서 88,430천 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였음
- 위법성 판단
 - 단가인하 합의후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 **관련 합의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움**
 - 수급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단가인하 적용기간의 장기간 소급적용을 인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열악한 수급사업자로서는 **계속적인 하도급거래관계에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단가인하에 의한 직접적인 이익이 박탈되는 등 하도급법 목적에 반함**

■ 삼성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08.4.3)

- 2003.4.3. 제품단종, 설계변경 등의 이유(자신의 귀책사유)로 P사 등 6개 수급사업자의 납품물량을 폐기처리 하면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410,699천원 중 66,699천원을 부당공제하였음

■ 삼성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2008.1.25)

- (주)대동사 등 38개 수급사업자로부터 2007년 1월에 2,257,860천 원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수령한 후에 일률적으로 5%씩 감액하여 총 112,874천 원을 감액하고 2,144,986천 원만 지급하였음

■ 감액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대금 지급 process 등
 -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구매담당자에게 하도급 대금 감액을 독려하고 있지는 않는지
 - 회사의 결손이나 거래처 요구 등을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3.4.2.6 부당경영간섭 금지(법 제18조)

■ Must Not Do These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 유지, 납기 내 납품 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 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량 조정, 수급사업자 임직원 선임 등
-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납품 관련 기술자료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Dos

-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경영간섭이 필요하다는 점, 즉 부당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협약체결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한 조건의 범위 내에서 협약체결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협약체결 수급사업자의 수급 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협약체결 수급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해 협약체결 수급사업자가 지원한 실적을 점검하는 행위
- 제조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행위
- 산재보험료 산출을 위해 임금대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범위만 아님.

■ 알에프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09.1.20)

- 알에프텍은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충전기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제조 위탁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업체와 단가를 직접 협의하여 결정한 뒤 결정내용대로 수급사업자에게 거래하도록 함
- 위법성 판단
 - 하도급 납품단가 결정이 경영의 본질적인 사항임을 감안 할 때 1차 수급사업자의 2차 수급사업자에 대한 자율적인 납품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임

■ 부당 경영간섭행위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하도급 업체와의 인사 교류 기타 존재 여부
 - 하도급업체에 재무 관리, 기술력 제고 등의 이유로 주요 임직원을 파견하거나 전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지
- 하도급 업체 관리
 - 상생 목적이 아닌 단가 결정 등의 이유로 하도급업체의 경영 수지 현황 요구 및 관리 등을 하고 있지 않은지
 - 하도급업체가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지

3.4.2.7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법 제19조, 제20조)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또는 분쟁조정신청)한 것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적발 시 고발대상입니다.

■ Must Not Do These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가 신고한 수급사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력업체에서 배제시키거나, 협력업체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보복조치에 해당)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삼성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2008.1.25)

- 2004년 이전부터 2006.9.15. 까지의 기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시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가 적발되자 자진하여 (유)오성금속 등 3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527,137천 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유)오성금속 등 24개 수급사업자로부터 380,804천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음

■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보복 조치 여부
 - 관계 기관 신고나 고발 등을 이유로 거래 단절, 거래 물량 감축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지
- 탈법 행위 여부
 - 공정위 서면실태조사나 조치 결정 등으로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고 이를 우회적으로 회수하거나 반납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지
 - 대금 지급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은 후 이를 납품 대금 등에서 감액 처리하지는 않는지

3.4.2.8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법 제12조의3)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기술자료의 의미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 사항(시행령 제7조의 3)).
 - 기술자료 제공 요구 목적
 -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 대상 기술자료의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 요구 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관계
 - 요구 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 요구 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 방법
 -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품질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납품하는 제조업자 실제생산제품에 대해 **제조공정도, 기구도면 등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자료가 포함된 내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납품되는 부품의 호환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기술자료를 제출 받거나, 안정적인 부품확보를 위해 복수거래처 개발을 이유로 기술자료를 제출 받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Must Not Do These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등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재료 가격, 납품단가 구성내역 원가 등이 포함된 기술 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과도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과 재계약시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하는 경우
-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A)로부터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아 다른 경쟁사업자(B)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그 수급사업자(A)에게 납품가격의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하도급법 제35조(손해배상 책임)

-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합니다.
-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3.4.3 하도급대금 지급단계

3.4.3.1 선금금 지급의무(법 제6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금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선금금의 사용용도, 지급 대상품목 등 선금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역 별로 상기 방식과 같이 하도급율을 감안한 선금금을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연7.5%) 또는 수수료(연 7%. 단, 약정수수료율이 이보다 높으면 높은 수수료를 적용)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 = 지급받은 선급금 x 하도급율
- 업무상 유의사항
 - 선급금은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기성비율에 맞추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시에 전액을 공제하거나 기성율보다 높게 선급금을 조기 공제하는 것은 범위반입니다.
 - 원사업자가 기성대금을 지급한 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지급한 기성대금을 공제한 잔여 하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1회 기성정산 후 60일 이내 지급과 동조 제3항의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중 어느 조항으로 적용 또는 우선하는지에 대하여는 제 13조 제3항은 동조 제1항의 보완조항으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사업자가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제1항의 대금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할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지급토록 규정한 것입니다.

■ 선급금 지급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선급금 발생 유무
 -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가 발주처가 있는 거래인지
 -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선급금 지급의 적정성
 - 선급금을 발주처로부터 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지급하였는지
 - 지급 시기는 적정한지
 - 선급금을 어음이나 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 시 수수료는 지급하였는지

3.4.3.2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법 제15조)

- 원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등과 관련하여 관세를 환급 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위 기간(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보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편, 원사업자가 관세 환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연 25%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4.3.3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법 제13조)

- 발주한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 등의 검사 기간 등에 불구하고 납품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지연이 됩니다.
- 자사의 사무처리지연과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서의 지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 : 원사업자에게 있어서는 사전에 수급사업자가 청구액을 집계하여 통지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가 지연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청구하도록 감독하는 등의 대응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는 어음이나 대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준공금,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삼성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2008.1.25)

- 2004년부터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에 동 목적물 중 일부를 자신의 제품생산에 투입하지 않은 채 전산상의 재고품(통상 피침인과 수급사업자는 이를 '전산재고' 라 부르며, 이하에서도 이를 '전산재고' 라 한다.)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물량에 대해서는 제품 생산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3.4.3.3.1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어음할인료 = 어음지급 하도급대금 × 0.075 × 지연일수 / 365일 (수수료산정방식 동일)

3.4.3.3.2 지연이자 지급의무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월 1회 이상 일괄마감하기로 약정한 경우)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60일(준공금, 기성금은 15일) 초과 지급 시 지연이자(연 20%)
-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황기일이 60일 초과시 할인료(연 7.5%) 또는 수수료(연 7%. 단, 약정수수료율이 이보다 높으면 높은 수수료를 적용)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연이자 = 지연지급 하도급대금 × 0.20 × 지연일수 / 365일

3.4.3.3.3 어음만기일 유지의무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지급받은 어음의 만기일보다 짧은 어음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어음만기일 유지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음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어음지급기간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하는 경우에 특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공급되는 발주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지급기간을 적용하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지급기간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발주자가 라인발행의 어음으로 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어음의 지급기간은 원사업자가 어음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만기일까지로 봅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 어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업무상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수급사업자가 이행보증서 제출을 지연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33조(과실상계)에 따라 법정지급기일 초과일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수령하라고 통지한 날부터 실제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공제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3.4.3.3.4 현금결제비율 등의 유지의무

- 현금결제비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액에서 현금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text{현금결제비율} = \frac{\text{현금지급액}}{\text{하도급대금지급액}} \times 100$$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할 경우에는 당해 현금비율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 2010년 8월부터는 현금 외에 현금성 결제로 인정되어 오던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양도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금융(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포함)등은 현금으로 인정되지 못하므로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현금결제비율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현금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현금비율을 산술평균한 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하는 경우에 특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공급되는 발주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현금비율을 적용하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도 그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업무상 유의사항

- 재하도급의 경우도 현금비율 유지 의무와 어음만기일 유지 의무가 적용되는가? : 원사업자를 발주자로 보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되는 재하도급의 경우(제2조 제10항)에 있어서도 원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결제받은 수급사업자는 2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현금비율 유지 의무와 어음만기일 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 어음할인료를 교부일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 지급하는 경우도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에 할인료를 어음교부일 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도급법(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나, 하도급대금의 경우와는 달리 할인료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지급규정이 없으므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케드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0.8.25)

- 광명트랜스포머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트랜스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592,053천원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8,516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 경원산업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스티로폼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446,225천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6,934천원을 어음을 교부한 날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주요 점검 사항

- 대금 지급의 적정성
 - 대금 지급기일은 준수하고 있는지
 - 대금 지급기일 미준수 시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는 적법하게 지급하는지

3.4.3.4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법 제16조)

- 요건 :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 제조, 수리 또는 건설위탁을 한 후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의 사유가 발생하였어야 하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며,
 -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그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데,
 - 하도급대금의 증액은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합니다.
 - : 증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 : 이 경우에도 제13조의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규정이 적용 됩니다. 즉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이 15일 초과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조정기준 (공정위 지침)
 -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즉, 개별품목별로 조정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별로 세부공사 내역에 따라 조정 받은 내용과 비율을 맞추어 지급하여야 하며, 총액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라도 원도급대금을 조정 받은 원사업자가 조정기준시점 이후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조정해 준 경우 적법합니다.

-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주는데 있어서 물가변동 조정 기준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 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때,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합니다.
- 조정기일
 - 발주자로부터 조정(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 Must Not Do These

- 원도급계약 체결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 : 물가가 기간에 정비례하여 상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에 비례하여 물가 상승률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 : 발주자는 비교시점과 기준시점의 물가차이를 기준으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것이므로 하도급계약 시점의 물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물가상승률을 공제하면 원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물가상승분 중에서 하도급대금을 조정함에 있어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 물가상승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법 제16조 제2항)

-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업무상 유의사항
 - 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단, 전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 물가변동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기지급된 선급금은 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하는 공종의 경우에도 증액해주어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공종별로 비율을 정해 조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대로 조정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금액을 조정 받고도 수급사업자와 약정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계약체결 60일 이내, 물가변동 조정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를 이유로 조정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입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물가상승분 중에서 하도급대금을 조정함에 있어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 물가상승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의 경우 복잡한 개별품목의 조정방법보다는 전체계약금액에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하는 총액 조정방법이 일반적입니다.
- 하도급계약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되고 원사업자가 ESC를 적용받았다면 ESC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의 공사분에 대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정기준일 이후의 잔여공사분에 대해서는 ESC를 수급사업자에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하도급대금 결정에 있어 당시의 물가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사실과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수급사업자에 대한 조정률은 원사업자가 적용받은 ESC조정률을 기준으로 원도급계약 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여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입증여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 금액 변동 여부
 -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 건이 발주자가 존재하는 거래인지
 -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와의 계약금액이 변경되었는지
- 계약금액 변경 등의 적법성 여부
 -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경우 하도급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 내용대로 조정하였는지
 - 계약 금액 변경 시 법정기일 내에 변경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는지
 -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 이를 기일 내에 지급하였는지

②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법 제16조의2)(2013. 11.29 시행)

- 원사업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시 10일 이내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면 아니 됩니다.

○ 요건

- 조합은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정협의권).
- 원사업자는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합니다.
-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협의 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Must Not Do These

-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단가조정 관련 지시·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함)에 임하지 않은 경우
-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

■ 업무상 유의사항

- 조정협의를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니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조정신청 요건, 절차, 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규정

1)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경우

*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조정일을,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의미

2)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동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 납품 등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

-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이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된 경우를 말함

- 조정신청 절차 및 방법

1) 조합장 등 조합원 일부의 독단적 판단에 의하여 신청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 혹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2) 불가피한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신청

○ 30일의 조정협의 기간 이전에도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서로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4.3.5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법 제17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 즉,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 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사업자는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 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2014.2.14부터 시행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물변제의 대상인 물품이 관련 법률에 따라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

· 대물변제의 대상인 물품이 제1호 이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기재한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함)

○ 원사업자는 위의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문서로 인쇄되지 않은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전자적 파일형태(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로 저장된 자료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관련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원사업자는 전자우편의 발송·도달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원사업자는 대물변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거나, 전자우편주소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원사업자는 관련자료를 제공한 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대물변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날
 - 제공한 대물변제에 관한 자료의 주요 목차
 - 대물변제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판결례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는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가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열위(劣位)적 지위를 보완하여 하도급거래가 상호보완적인 협조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려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 또는 승낙하는 경우에는 '의사에 반하여' 지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경우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강박에 의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당초부터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까지 하도급대금을 약정한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사업자의 부당한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대법원2003.5.16.선고2001다27440선고판결]

■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대물변제의 계약서 기재 여부
 - 하도급 대금 지급 시 대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 계약서 기재 시 법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는지
- 대물 변제 시 적법성 여부
 - 계약서로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사후에 일방적으로 대금을 대물로 지급하지 않는지
 - 계약 내용과 달리 대물에 대한 평가액이나 지급대상을 변경하여 지급하지는 않는지

3.4.3.6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법 제12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Must Not Do These

- 계속적인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실제 투입한 물량에 대한 가액 이상으로 차감하는 것
- 원사업자가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대가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관련 주요 점검사항 및 행동지침

- 하도급업체와 본 계약 이외의 거래 여부
 - 하도급업체와 계약 내용 수행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 등을 회사로부터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

- 거래 사실이 있는 경우 대가의 적정성 여부
 - 하도급업체의 구매 또는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적정하게 계산하고 있는지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전에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등 하도급업체의 이익에 반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는지

3.5 위반 시 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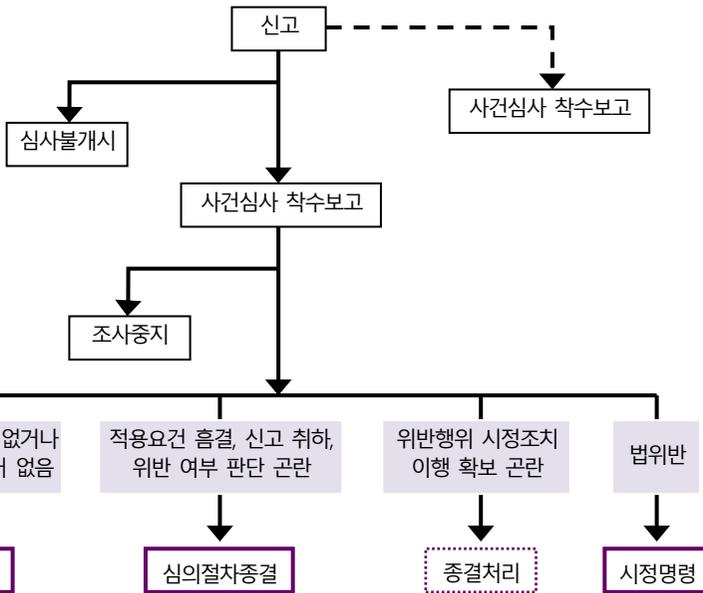
3.5.1 하도급 사건 처리 절차

1. 사건의 단서

2. 사건의 인지

3. 사건처리

4. 하도급법 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 (하도급법 실효성 확보 수단)



3.5.2 과징금부과(과징금부과고시 개정, 2013.5.22)

-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 원칙적 부과 대상
 - 상습 법 위반 업체(과거 3년간 3회 이상 범위반 조치(경고 이상)을 받고 벌점 누적이 2점 이상)
 -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 구분한 후, 다시 유형 별로 세분
 -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 위반행위의 수, 관련 수급사업자 수 등을 감안하여 중대성 및 파급효과를 판단합니다.

<중대성 및 파급효과에 따른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	비고
위반행위 유형	서면 미발급,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보복조치, 탈법행위	· 목적물 등의 최초 납품인도 또는 제공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 및 5천만원 이하 소액 하도급거래 서면 미발급 제외 · 위반금액 3천만원 이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 감액 제외
위반금액	3억원 초과	
위반행위 수 & 수급사업자 수	3개 이상 위반행위 & 30개 이상 관련 수급사업자	

<과징금 가중사유 및 비율>

가중사유	요건
조사거부· 방해·기피 등	·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역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40%) ·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30%) · 그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20%)
보복조치·탈법행위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또는 제20조(탈법행위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30%)
법 위반 전력이 많은 경우	·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20%) ·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20%) · 과거 3년간 5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50%)

3.5.3 벌점 부과

- 법 위반 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 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 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게 됩니다.
- 시정조치 유형 별 벌점 점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벌점 부과 기준 2

경고(서면실태조사)	경고(신고 및 직원인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0.25점	0.5점	1.0점	2.0점	2.5점	3.0점

3.5.4 손해배상

-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하 배상 책임을 집니다.
※ 소송에서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제외

3.5.5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법 제25조의4)

- 공표 대상
 - 과거 3년간 3회 이상 시정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하도급 벌점(누산점수)이 4점을 초과하는 원사업자
- 공표 방법 : 매년 선정 후 관보 또는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1년간)

3.6 업무 시 유의사항

3.6.1 납품조정에 대한 성실한 대응자세 견지

- 원자재가격 상승 등 납품단가 조정사유 발생 시 수급사업자의 단가조정 요청이 있으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원·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서면미교부행위로 인정되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3.6.2 하도급법 상 전적서 접수 및 수정 시 주의사항

- 협력회사의 사용 양식(제출 양식) 그대로 사용할 것
- 가격이 변화가 있다고 해서 제출된 전적서에 사선을 긋고 도장을 찍은 후 신규 단가를 기입하지 말 것. 신규 단가를 부득이하게 기입 시 해당 업체의 협상 담당자가 직접 기입하게 할 것
- 협력회사의 명판 및 날인이 없는 경우는 반드시 수령을 거부할 것
- 단가 협상 결과 품의 예정된 금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일 경우 '단가합의서'를 작성하는 이외에 별도로 신규 전적서를 작성해 올 것을 요구할 것
- '원가절감 몇% 달성', 'CD 계획', '이전 가격과의 비교표' 등 단가 인하를 암시하는 그 어떠한 단어도 표기하지 말고, 품의서 작성 담당자의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를 붙여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것

3.6.3 가단가(仮單價)유의점

- 가단가를 기재한 경우, 정식단가가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단가가 결정되지 못한 사유」와 「단가를 결정할 예정기일」을 기재하고, 단가가 결정된 후에는 바로 보충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3.7 하도급거래 단계 별 확인사항 : 하도급거래 시 단계 별로 다음과 같은 확인과정을 거쳐보십시오.

3.7.1 서면(서류) 보존기한, 불공정한 발주 변경 및 취소 관련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해놓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 불확실한 발주행위(위탁물 내용, 단가, 수량, 납기 미정 등) 등의 발주(주문)서 발행 금지
- 협력업체의 사정으로 변경할 경우 협력업체의 변경요청공문 접수 후 처리(변경요청공문 3년간 보관)
- 다량 발주를 전제로 단가 결정 후 일부만 발주한 경우도 잔량에 대한 발주 취소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기간에 발주할 수 없는 물량의 약속은 금지
- 생산계획 취소 등 협력업체에 귀책사유 없이 발주 취소가 발생할 경우, 즉시 협력업체의 생산 현황을 확인 후 물량을 인수
- 확인사항
 - 거래기본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하였는가?
 - 체결한 계약서 조항에 불공정한 조항의 유무를 검토하였는가?
 - 계약서 작성 시 기명날인 및 간인을 하였는가?
 - 협력업체 선정 검토 시 업체 정보(자산, 종업원, 매출액, 종목 등)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는가?
 - 생산계획의 통보를 발주(주문)서로 대신하는 행위는 없었는가?
 - 추가 발주 및 납기 변경 등 발주 내용 변경에 대한 발주서 미교부 행위는 없었는가?
 - 불확실한 발주행위(위탁물 내용, 단가, 수량, 납기 미정 등)는 없었는가?
 - 기발주한 내용의 변경 및 취소가 발생한 경우 협력업체와 합의 후 처리 하였는가?
 - 무리한 납기 준수 및 제조 불가능한 위탁 등 납품 불가능한 내용의 발주행위는 없었는가?
 - 발주(주문)서를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 협력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이 발주 취소한 경우 사후처리로 기발주한 물량을 전량인수(수령) 하였는가?

3.7.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확인사항
 - 단가 결정 시 협력업체와 합의 하였는가?
 - 단가 결정 시 복수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검토 하였는가?
 - 물가수준을 반영한 단가 결정이 이루어 졌는가?
 - 단가 인하를 일시에 일률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는가?
 - 원가 인하 합의 후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았는가?
 - 원도급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단가 결정은 없었는가?
 - 단가 결정 시 검토한 증빙 등의 보관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였는가?

3.7.3 부당한 수령 거부

- 확인사항
 - 위탁물 수령 후 즉시 양식화된 물품수령증을 교부하였는가?
 - 물품수령증을 교부하고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 협력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는가?
 - 고객(원발주자, 수요자)의 클레임,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는가?

3.7.4 검사 및 검사 결과 통보

- 확인사항
 - 계약서에 공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을 포함시켰는가?
 - 검사 기준 및 방법을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못할 경우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였는가?
 - 위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협력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는가?
 - 검사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에 대한 사유를 검사 방법 협의 시 합의하였는가?
 - 검사 기간에 대한 합의서 및 10일 초과 사유 증빙을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 검사 기간이 초과된 후 불량품이 발생하여 반품시킬 경우 1:1로 교환하고 있는가?
 - 당초 합의된 검사 기준 및 방법보다 높은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판정하지 않았는가?
 - 검사 기간이 초과된 후 반품되는 물품의 사유서(증빙)를 보관하고 있는가?
 - 위탁물의 검사 결과 통보 후 생산공정 상 발견된 불량품의 경우 생산부서에서 불량품과 불량사유를 첨부하여 구매부서로 반품을 요청하는 절차에 의해 1:1로 교환하고 있는가?
(불량사유서는 구매부서에서 3년간 보관)

3.7.5 부당 감액

- 확인사항
 - 단가 인하 합의 후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가?
 -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등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금액을 대금지급 시 부당하게 조정하지는 않았는가?

3.7.6 기타 불법 및 탈법행위

- 확인사항
 - 위탁물에 소요되는 부품 및 원재료의 구입처를 지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위탁물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의 구입처를 지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업체에 위탁물과 관계 없는 물품의 구입처를 제한하는 행위 및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업체의 경영자료 등을 일방적으로 징구하거나 기타 부당한 경영 간섭(인사청탁 등)을 하지는 않았는가?
- 하도급거래 물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 간섭을 하지는 않는가?
- 불공정거래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로 하여금 허위자료 및 허위보고를 요구하지는 않았는가?
-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편법으로 이행조치를 회피하지는 않았는가?
- 생산기술 지원 등의 사유로 협력업체의 기술자료 등을 공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구두로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는가?
- 일정 물량을 구입한다는 조건 하에 생산설비 증설을 하도록 하고 거래물량 축소 또는 거래 중단을 하지 않았는가?
- 협력업체가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경우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업체에 정해진 기일 이내에 관계환급액을 지급하였는가?
- 수출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비용(환차손, 외환수수료 등)을 협력업체와 합의 없이 부당하게 부담시키지는 않았는가?

3.7.7 하도급대금 지급

- 확인사항
 -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가?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60일)이 초과된 경우 초과된 일수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는가?
 -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 계산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한 후 편법으로 회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 거래를 결정한 후 협력업체와 대금지급 기준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였는가?
 - 계열회사에 지급되는 어음의 만기일이 비계열회사와 다르지 않는가?
 - 위탁물 수령 후 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발행하는 경우는 없는가?

3.7.8 대물변제

- 확인사항
 -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자사 및 타사의 물품으로 지급하지는 않았는가?

3.8 Q&A

- Q. 하도급공정화 지침에는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하다.’ 에서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을 해석함에 있어 입찰일 기준인지 아니면 계약체결일 기준인지?
- A. 하도급계약은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기준시점 이후에 계약체결할 경우 Escalation(물가변동액)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도급계약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고, 하도급계약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조정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 Q. 계약서에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지 않아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구의 책임인가?
- A.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수급사업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할 의무가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불확실성 및 예측하지 못한 사정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전가하는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이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Q. 계약서 서면 교부 시 적법한 시점은? 또한 긴급상황으로 인해 납품질차가 이루어진 후에 소급적용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 A. 서면(계약서)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를 하여야 하므로 납품질차가 이루어진 후에 소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범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Q.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발주는 VAN(전산망)으로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 A.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법한 서면 교부로 볼 수 있습니다.
- Q. 하도급 업체가 내국신용장 개설을 원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야 되는가?
- A.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범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추후 입증을 위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 개설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아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특별한 방식을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Q. 납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주회 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목적물 수령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가?

A. 하도급법 상 목적물수령일은 실제 목적물의 점유개시 또는 인도완료 시점으로 보나, 예외적으로 납품이 빈번하여 양당사자 “합의” 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날을 목적물수령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목적물수령일로 볼 수 있습니다.

Q. 원사업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확보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업체를 일정자격으로 제한할 경우 문제가 되는가?

A.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공정개선, 품질관리 등의 경영지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수급사업자의 선정 및 계약조건설정 등의 재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 위탁의 범위는?

A. 하도급법 상 제조 위탁의 범위는 광범위하여 모든 내용을 기술하기는 어려우나 제조 위탁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제조 위탁 받은 것을 동일한 업을 영위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제조 위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가설비, 단순구매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거래 당사자 간 상이한 전해가 지속되어 계약 갱신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계약서 서면 미교부에 대한 책임이 원사업자에 있는가?

A. 서면(계약서)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를 하여야 하므로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변경된 작업에 착수하기 전 갱신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 간 이전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범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하여야 한다고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기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A.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예컨대 목적물의 치수, 전류에 견디는 정도, 인장강도 등을 양당사자가 사전에 정하고 목적물 수령 시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합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하도급대금 지급 시 어음대신 현금을 지급하고 어음할인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다면 부담 금액에 해당되는가?

A.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할인료는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해진 하도급대금에서 현금지급을 이유로 할인료에 따른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부담금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규격품, 표준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 제조위탁에 해당하는가?

A. 소위 규격품, 표준품으로 넓게 시판되고 있어 시장품목으로 구입이 가능하여 제조 의뢰가 실질적으로는 구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격품, 표준품일지라도 원사업자가 사양 등을 지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그 제조를 의뢰하면 제조 위탁에 해당합니다.

Q. 전화로 주문하고 후일 주문서를 교부하는 방법은 문제가 되는가?

A. 전화만에 의한 발주는 서면미교부로 됩니다. 긴급하여 어찌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전화로 주문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는, 「주문내용에 따라 바로 주문서를 교부할 것이므로 그것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주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Q.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

A. 산정방법은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곤란한 어쩔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試製品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수리 위탁에 있어 수리해 보지 않고는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산정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한 역무제공 위탁에 있어 그 기간에 제공한 역무의 종류 및 양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등)에 산정방법의 형태로 있으면 정식단가로서 인정됩니다. 단, ① 산정방법은, 하도급대금의 구체적 금액을 자동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면 안되며, ② 산정방법을 정한 서면과 발주서면이 별도의 것인 경우에는 이들 서면의 관련성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으며, 또한, ③ 늦어도 최초의 대금지급 시까지는 하도급대금의 구체적 금액을 확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두어야 합니다.

Q. EDI에 의해 발주하는 경우, 시스템상 단가를 공란으로 해놓고 발주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어찌면 좋은가? 또 실제의 단가는 아니라는 것을 명기한 후에 「0원」으로 표기하는 것은 가능한가?

A.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0원이 실제의 단가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후에 발주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Q. 가단가(假單價)는 금지되는가?

A. 가단가를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가단가를 기재한 경우에 정식단가가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단가가 결정되지 못한 사유」와 「단가를 결정할 예정기일」을 기재하여 단가가 결정된 후에는 바로 보충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Q. 지정가로 수급사업자에게 주문을 하면 문제가 되는가?

A. 指定價로 일방적으로 단가를 지정하는 방식에 의해 통상 지급하는 대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은 부당한 대금결정으로 되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에 충분히 협의하여 쌍방이 납득하는 단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납기전에 납품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

A. 약속한 納期 전에 납품하면 원사업자에게는 수취할 의무가 없어 수취를 거부하더라도 수령거부는 아닙니다.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수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경우에는 假受領으로 납품된 물품을 납기까지 보관하고 주문서에 기재된 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좋습니다(假受領하지 않고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

Q.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수급사업자의 희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 경우 어음할인료 상당분을 감액해도 좋은가?

A. 수급사업자와의 사이에 지급수단을 어음으로 정하고 있는데 수급사업자의 희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원사업자의 단기조달금리 상당액을 초과하여 감액하면 그 초과분은 하도급대금 감액으로 범위반이 됩니다. 나아가 일시적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을 현금으로 해서 발주서면을 교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 발주서면에 기재한 하도급대금액에서 할인료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은 하도급대금 감액으로 되므로, 이에 결맞는 단가설정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후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단가변경을 하는 경우, 소급적용에 관해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하는가?

A. 단가의 인하에 대해 합의한 날(합의일)과 신단가의 적용을 개시하기로 한 날(단가 개정일)이 다른 경우에는, 합의했다고 하여 단가변경일보다 전의 발주에 대해 신단가를 적용하면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합의일부터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가 제출되었을 뿐일 때에는 합의한 것으로 되지 않고, 단가개정에 관해 서로가 합의한 날이 합의일이 됩니다.

나아가 0월 납품분부터 신단가를 적용하려는 교섭은, 교섭이 장기간 걸림에 의해 소급적용으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0월 발주분부터 해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수급사업자의 급부에 하자 등이 있어 하도급대금의 지급 전(수령후 60일 이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좋은가? 또한 하도급대금의 지급후에 반품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당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해도 좋은가?

A.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이유가 있어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Q. 수급사업자로부터 당월 납품분을 익월 납품분으로 취급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하도급대금도 익월 납품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했을 경우에도 60일을 초과하는 지급지연인가?

A. 법의 적용에서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은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Q. 발주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때마다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또, 물가상승 등 내외적인 변수로 인하여 단가가 변동이 있을 경우 매번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가?

A. 납품이 빈번하고 단가변동이 수시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수량, 단가 등은 발주서로 정함을 명백히 한 다음 이에 따라 발주서로 보완하면 됩니다. 계약기간 중 단가변동이 있거나 신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를 거쳐 단가합의서 등에 새로운 단가를 기재하고 서명이나 기명 날인하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Q.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서류는 하도급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3년이 지난 하도급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

A.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경우에는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23조). 거래가 종료된 날이란 목적물을 납품한 날(제조, 수리위탁), 용역위탁은 용역이 완료된 날,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합니다(하도급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하도급법시행령 제6조)

3.9 하도급 법정기한 규정

<비대금 관련 법정기한>

구분	대상자 ¹	주요내용	기한	기한초과시	비고
서면 발급 시기 (법 §31)	원사업자	다음의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서면을	제조 위탁 - 작업 착수 전 수리 위탁 - 수리행위 시작 전 건설 위탁 - 계약 공사 착공 전 용역 위탁 - 용역수행행위 시작 전		서면 미교부는 과징금 부과대상이나 서면 지연교부 및 일부 누락하여 발급한 경우, 하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제외됨
위탁 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 (법 §36)	원사업자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 내용, 대금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경우 그에 대해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회신을 발송하여야 함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단, 천재 등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됨
서류보관 (법 §39)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서면/서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거래 종료 후 3년		
검사 기준·방법 및 시기(법 §9)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가능
신고 통지 (법시행령 §10②)	공정거래 위원회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함	신고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법 §23)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사건만 조사 개시 대상이 됨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심사 불개시 (미착수종결)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 된 경우에는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¹ 당해 기한을 준수해야 할 입장에 처한 자를 말함.

<대금 관련 법정기한>

구분	대상자	주요내용	기한	기한 초과 시	비고
하도급대금의 지급 (법 §13①②)		목적물 등의 수령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경우	정한 날	하도급법에 의하면 각각의 경우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달리하고 있음 그러나 지연이자는 법정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법 §13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기산하고 있음	양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및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 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하도급법 §13① 단서)에는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라도 그 정한 날을 지급기일로 봄
		다음의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목적물 등의 수령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		
지연이자 (법 §13⑧)		목적물 등의 수령일 등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현재 연20%)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수령일부터 60일 이후부터		
어음할인료 지급 (법 §13⑥)	원사업자	어음을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교부하는 경우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연 7.5%의 할인율이 적용된 어음할인료를 지급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교부하는 경우 60일이 지난 날부터 교부일까지 지연이자 지급
		어음을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교부하는 경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선금금의 지급 (법 §6)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 (2009.9.15.부터 시행)	
발주자로부터의 준공금 등 지급 관련 (법 §13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법 §16)		설계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되거나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야 함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 30일 이내에 조정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후 지연이자가 붙음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한함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에 대한 협의 의무 (법 §16-2)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함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양당사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